

2019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매뉴얼 설명회

2019. 2. 14(목)

민간평가센터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법적 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

법 제43조제10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시행규칙 제106조 ①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진단, 분석의 능력
2.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
3. 시설 · 장비의 성능
4. 보유인력의 교육이수, 능력개발,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평가기준 개선

- **[평가제도 확대]**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모든 민간재해예방기관
으로 확대 추진
 - * 측정·특검을 포함한 총 13개 분야로, 재해예방기관(건설분야) 평가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1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중
 - 평가주기 2년 : 보건분야(측정, 특검, 대행, 석면)
 - 평가주기 1년 : 보건분야 제외한 9개분야
- **[평가항목 및 비중 조정]** 전 분야 평가 제도 도입에 맞춰
정책추진 방향 및 평가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평가항목
및 비중을 조정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달라지는 점 (공통분야)

- 평가분야를 4개에서 **2개분야**(①운영체계, ②업무성과)로 **단순화**
- 평가배점을 500점에서 **1,000점 만점으로 변경**
[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 조정]
- 평가등급을 4단계에서 **5단계로 세분화**(점수표 조정 포함)하여 **평가의 변별력 확보**
 - ‘19년 4단계로 평가[고시기준] : **S**(900점 이상), **A**(800점 이상), **B**(700점 이상), **C**(700점 미만)
 - ‘21년 5단계로 평가 : **S**(900점 이상), **A**(800점 이상), **B**(700점 이상), **C**(600점 이상), **D**(500점 이상)
- 포상 또는 행정처분 실적, 기관의 종합화에 따라 **가감점제 도입**(-100점 ~ +80점)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2017년 기관평가 결과 ('19.2월 기준 10개 지정반납)

등급	소계	서울청	중부청	부산청	대구청	광주청	대전청
(개소)	197	28	<u>63</u>	34	21	24	27
S	43	7	5	<u>16</u>	4	8	3
A	82	12	<u>28</u>	12	11	11	8
B	47	6	19	4	5	4	9
C	25	3	11	2	1	1	7

2019년 평가대상 기관 현황

소계	서울청	중부청	부산청	대구청	광주청	대전청
219(개소)	32	<u>67</u>	40	22	28	30
신규기관	4	4	<u>6</u>	1	4	3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총괄표 [A. 운영체계] - 42문항(신설 10문항)

분 야	평 가 항 목	세 부 평 가 내 용	17년문항	17년	변경
A 운 영 체 계	소 계			197.5	400
	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(80)	1.1 운영방침,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	일부신설	30	60
		1.2 업무관리체계	신설	-	20
	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(인적기준, 150)	2.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	신설	-	40
		2.2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	신설	-	50
		2.3 직원 교육·훈련(내·외부)	4-1~5, 4-9	40	60
	A.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(물적기준, 170)	3.1 고성능 장비 추가확보 및 유지, 관리의 적정성	신설	-	40
		3.2 법정 시설 및 장비 구비 및 성능	3-1~10, 12,14,16~24	127.5	130
	가 감 점	4.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의 포상 수여 실적(대통령:5,총리:4,장관:3,이사장:2, 노동청:1)	신설	-	+10
		4.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처분개월수별 -15점, 최대 -80점)	신설	-	-15~ -80
		4.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건별 -2점, 최대 -20점)	신설	-	-2~ -20
	A.5 종합화	5.1 종합기술지원(컨소시엄 구성 포함, 동일기관 +5점, 타기관 +10점)	신설	-	+5~ +10



지정측정기관 평가

총괄표 (B. 업무성과) - 44문항(신설 3문항)

분 야	평 가 항 목		세 부 평 가 내 용	17년문항	17년	배점
B 업 무 성 과	소 계				302.5	600
	B.1	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(310)	1.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	2.1/2.2	35	70
			1.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	2.3/2.4	30	40
			1.3 청력검사	2.5/2.6	30	40
			1.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	2.7/2.8	20	40
			1.5 판정,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	2.9~2.12	70	100
			1.6 2차 검진 대상자 후속조치	신설	—	20
	B.2	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(100)	2.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능력	1.3~1.13	35	40
			2.2 청각학적 검사능력	1.4~1.17	20	20
			2.3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능력	1.20~1.21/4.11	15	20
			2.4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여 여부	1.19	2.5	20
	B.3	신규 발굴률(50)	3.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률	신설	—	50
	B.4	고객 만족도(80)	4.1 고객만족(수검자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	4.6~4.8/4.13~4.14	20	60
			4.2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수	삭제	—	50
			4.3 사후관리 대상 지도	2.13	15	20
B.5	그 밖의 제반사항(60)	5.1 문진결과 결과표 관리 및 결과표 송부	4.10/4.12	10	60(+10)	
가점	B.6직업병 감시체계	6.1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	신설	—	최대+50	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

합계 1,000점 + ∞ (80점)

신규

230점(13문항, 15%)

- 측정기관평가 : 260점(5문항, 11%)

기존

770점(73문항, 85%)

- 측정기관평가 : 740점(36문항, 89%)

가·감점

-100 ~ +80(5문항, 5.8%)

- 측정기관평가 : -100 ~ +20(4문항, 8.8%)

- 평가 센터 현장 평가 : 55문항, 620점
- 외부전문가(의사) 평가 : 13문항, 310점
- 연구원(정도관리 결과) : 18문항, 70점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A. 운영체계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: 배점 80점

A.1.1	특수건강진단 운영방침 수립	취득 점수	신설
평가항목 A.1.1.1	평가기준 (배점 : 10)	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운영방침 수립	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적정한 경우	☐ 10	
	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보통인 경우	☐ 6	
	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	☐ 2	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기관에 적합한 운영방침 의 수립여부를 평가		
운영방침 및 매뉴얼 등 문서화 : 내부품의(결재)를 득하여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, 이하 평가 문항에서 문서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 － 문서등록 대장은 접수, 생산, 발송문서 등 통합대장 작성			
평 가 방 법	－ 평가기간 동안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고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“10” － 평가기간 동안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지 않았으나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“6” － 한단계 하향 평가 :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미공표, 매년 운영방침 성과개선 여부 미평가 － 운영방침은 최고경영자 정책 목표, 성과개선 내용 반드시 포함, 비문서화는 미흡으로 평가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: 배점 80점

A.1.1	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	
평가항목 A.1.1.2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생체시료노출평가 표준분석지침	표준분석 지침서가 적정한 경우	☐ 10
	표준분석 지침서가 보통인 경우	☐ 6
	표준분석 지침서가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분석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을 표준화한 생체시료 분석업무 지침을 보유하여 신뢰성 확보	
지침필수 항목 : 개정일시, 분석항목, 분석방법, 결과 계산방법 등		
평 가 방 법	- 표준 분석지침 비치(전자화일 최종본 인쇄물 또는 유인물 비치) “10” - 표준 분석지침 보완 필요한 경우 “6” (내용 일부 누락 또는 보완 필요) - 표준 분석지침 미비치 “2” (공단 또는 타기관 지침 보유, 비문서화) -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외부기관 점수 반영(2개이상은 낮은점수) - 한단계 하향평가 : 분석물질에 대한 지침 누락, 분석자 면담결과 지침서 미숙지, 최신 개정내용 미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: 배점 80점

A.1.1	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	
평가항목 A.1.1.3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생물학적노출평가 장비사용매뉴얼	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이 적정함	☐ 10
	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이 보통임	☐ 6
	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이 미흡함	☐ 2
평 가 취 지	검진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장비의 정확한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매뉴얼을 확보하는 등 기기 유지상태 평가	
	대상장비 : AA, HPLC, GC, 매뉴얼 필수내용 : 작동순서, 장비사용법(한글), 장비관리 방법	
평 가 방 법	-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모두 비치하고 내용이 적정함 “10” -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비치하였으나, 일부 장비에 대한 지침이 누락되거나 지침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“6” - 장비별 사용매뉴얼 비치하지 않음 “2” (비문서화, 판매회사 매뉴얼 그대로 비치) - 시료분석 외부기관 의뢰 경우 :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(2개이상 기관 최저점수) - 한단계 하향평가 : 매뉴얼 필수내용 일부 누락, 분석담당자 장비사용 매뉴얼 미숙지, 최신 개정내용 미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: 배점 80점

A.1.1	진단검사 시료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	
평가항목 A.1.1.4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진단검사시료보관및 운반에관한 지침서보유	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적정함	☐ 10
	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보통임	☐ 6
	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미흡함	☐ 2
평 가 취 지	진단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, 보관, 운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침서 유무를 평가 하여 진단검사의 질 향상	
평 가 방 법	-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서 보유 “10” -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서는 없으나 외부기관에서 작성한 지침서를 보유(활용)하고 있음 “6” -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없음 “2” (비문서화) - 외부기관 의뢰한 경우에도 채취에서 폐기에 관한 사항 모두 명시 - 한단계 하향평가 : 임상병리사 면담 결과 매뉴얼 미숙지, 모든 검체(객담, 소변, 혈액) 사항 또는 채취후 전처리, 보관, 운반, 폐기 사항 일부 누락, 최신 개정내용 비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: 배점 80점

A.1.1	폐활량검사 표준 매뉴얼 보유	
평가항목 A.1.1.5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폐활량검사 표준매뉴얼 보유여부	폐활량검사 매뉴얼이 적정함	☐ 10
	폐활량검사 매뉴얼이 보통임	☐ 6
	폐활량검사 매뉴얼이 미흡함	☐ 2
평 가 취 지	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특성에 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및 활용여부 확인	
표준매뉴얼 :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(연구원) 폐활량검사이침을 기반으로 기관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 매뉴얼 내용 : 검사의 목적 및 표준화 검사 방법, 피검자의 검사자세 설명, 바른 교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 여부		
평 가 방 법	- 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비치 “10” - 부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비치 “6” (매뉴얼 내용 누락 또는 부적정 등) - 표준매뉴얼 없음 “2” (비문서화, 공단 정도관리 교재 비치 또는 외부기관 자료 비치) - 한단계 하향평가 : 검사직원(담당자) 면담 결과 매뉴얼 미숙지, 최신 개정내용 미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: 배점 80점

A.1.1	실험실 안전보건 지침	
평가항목 A.1.1.6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실험실안전보건지침	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적정함	☐ 10
	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보통임	☐ 6
	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미흡함	☐ 2
평 가 취 지	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(안전조치) 및 제24조(보건조치)에 따른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지침 내용 : 화학물질 누출, 누전사고 대처, 분석용 유해물질 배기 또는 배액처리, 혈액 및 소변 등 검체취급, 설비확인 (세안 및 비상샤워 설비, 실험실용 후드설치, 가스용기 안전조치), 실험용 보호용구(방진, 방독마스크 등)	
평 가 방 법	-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고, 지침에 따라 장비 및 설비점검을 실시 “10” -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, 일부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“6” -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“2” (비문서화) -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외부기관 점수 반영(2개이상은 낮은점수) - 한단계 하향평가 : 분석자 면담결과 지침서 미숙지, 실험실 안전점검 일지 서명 누락, 최신 개정내용 미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: 배점 80점

A.1.2	업무관리체계	취득 점수	신 설
평가항목 A.1.2.1	평가기준 (배점 : 20)		평가결과
업무관리체계의 적정성	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적정	☐ 20	
	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일부 미흡	☐ 12	
	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미작성	☐ 4	
평 가 취 지	검사, 분석, 진찰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확인		
<준비서류>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관련 증빙서류			
평 가 방 법	-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“문서화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작성으로 평가 “4” - 업무분장에서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“12” - 한단계 하향평가: 인사이동, 퇴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변경 미조치, 기관 홈페이지, 블로그,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담당자별 업무, 연락처 미공개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: 배점 150점

A.2.1	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	취득 점수	신 설
평가항목 A.2.1.1	평가기준 (배점 : 40)		평가결과
신업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보	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9점		☐ 40
	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6점		☐ 30
	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3점		☐ 20
	합산점수가 0점(자체분석 기관)		☐ 10
	합산점수가 0점 (자체분석 미 실시 기관)		☐ 0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(대상업무, 유해인자 및 대상자 선정 등)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등 산업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확보를 유도하기 위함		
<준비서류> 추가인력에 대한 고용보험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증빙서류			
평 가 방 법	- 9점 : 산업위생관리기술사, 산업보건지도사(구, 산업위생지도사), 산업전문간호사 - 6점 : 산업위생관리기사 - 3점 :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※ 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자격만 인정 - 고용부 신고인력 기준으로 법정필수 인력외에 전문인력추가 채용 평가(평가기간 ½이상 근무) -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중에서 전문자격 취득 평가(의사, 분석사 제외)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: 배점 150점

A.2.2	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	취득 점수	신 설
평가항목 A.2.2.1	평가기준 (배점 : 30)		평가결과
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	산업보건분야 종사자 경력이 평균 5년 이상	☐ 30	
	산업보건분야 종사자 경력이 평균 3년 이상 5년 미만	☐ 18	
	산업보건분야 종사자 경력이 평균 3년 미만	☐ 6	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종사자의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을 평가하여 충분한 경험에 따른 지식과 응용력을 가진 인력을 보유토록 유도 함으로써 검진 결과의 신뢰성 제고		
	<준비서류>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증빙서류		
평 가 방 법	- 산업보건분야 종사경력: 특수건강진단, 직업환경측정,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평가 -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한 모든 지정 인력 평가(평가대상기간 1/2이상 포함) - 개인별 최대 경력 인정 상한 10년 예) 종사자 3명 중 1명(15년), 2명(1년) : (10년 + 1년 + 1년) / 3명 = 4년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: 배점 150점

A.2.2	전문인력 고용 기간	신 설
평가항목 A.2.2.2	평가기준 (배점 : 20)	평가결과
전문 인력 고용 기간	현 소속기관의 고용 기간이 평균 5년 이상	☐ 20
	현 소속기관의 고용 기간이 평균 3년 이상 5년 미만	☐ 12
	현 소속기관의 고용 기간이 평균 3년 미만	☐ 4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토록 유도하여 검진결과의 신뢰성 제고 <준비서류>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증명서류	
평 가 방 법	○ 평가최초 실시일 기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모든 지정 인력에 대해서 평가 - 특수건강진단부서 경력 1년 이상인 자가 현소속 검진기관의 특수건강진단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중사한 경력 포함(평가 대상기간 1/2 이상 중사자, 계약자 포함) ○ 개인별 최대 경력 인정 상한 10년 예) 중사자 3명 중 1명(15년), 2명(1년) 경력인 경우 : (10년+1년+1년)/3명 = 4년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: 배점 150점

A.2.3	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, 훈련 계획 수립	
평가항목 A.2.3.1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등 문서 보유 여부	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적정한 경우	☐ 10
	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보통인 경우	☐ 6
	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함양, 기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노력 정도를 평가 <준비자료> 교육계획 문서, 교육결과 및 이수증	
평 가 방 법	- 평가기간 동안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“10” - 평가기간 동안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았으나,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“6” -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입증이 안 되는 경우 “2” (비문서화) - 고용부 신고 인력기준으로 평가대상 기간 ½ 이상 종사자 포함 평가 - 한단계 하향평가 : 교육계획 대비 연간 실행이 50% 미만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: 배점 150점

A.2.3	외부 전문교육 참여(의사)	
평가항목 A.2.3.2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문교육 이수	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외부교육 참여가 적정한 경우	☐ 10
	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외부교육 참여가 보통인 경우	☐ 6
	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외부교육 참여가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함양, 기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노력 정도를 평가	
<지정교육기관 및 유관단체> 안전공단, 작업환경의학회, 특수건강진단기관협의회, 진단검사의학회, 직업성폐질환학회, 직무스트레스학회 등		
평 가 방 법	- 모든 전문의가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“10” - 일부(50% 이상) 전문의가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“6” - 일부(50% 미만) 전문의가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“2” - 교육인정 기준 4시간 이상, 법정교육 및 학회참석을 제외하고 산업보건 및 의학 관련 교육 이수(직무관련 통계교육 인정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(인적기준) : 배점 150점

A.2.3	외부 전문교육 참여(의사 인력 제외)	
평가항목 A.2.3.3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자 교육 이수 (의사 인력 제외)	외부 전문교육 참석율이 적정한 경우	☐ 10
	외부 전문교육 참석율이 보통인 경우	☐ 6
	외부 전문교육 참석율이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함양, 기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노력 정도를 평가(의사인력 제외) <지정교육기관 및 유관단체> 안전공단, 직업환경의학회, 특수건강진단기관협의회, 한국산업간호협회, 직업건강간호학회, 대한임상병리사협회, 대한임상병리정도관리협회, 대한방사선사협회,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 등	
평 가 방 법	- 모든 인력이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“10” - 일부(50% 이상) 인력이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“6” - 일부(50% 미만) 인력이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“2” - 고용부 신고 인력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 ½ 이상 종사자 포함평가(교육 인정기준 4시간) - 법정교육 및 학회 참석 제외하고 산업보건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(직무관련 통계 교육 인정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(인적기준) : 배점 150점

A.2.3	내부 직무교육 실시	
평가항목 A.2.3.4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내부 직무교육 실시여부	내부 직무교육 실시가 적정한 경우	☐ 10
	내부 직무교육 실시가 보통인 경우	☐ 6
	내부 직무교육 실시가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에 관련하는 인력이 적절한 내부 직무교육을 받는 정도를 평가(의사포함 모든 인력 평가)	
<준비서류> 교육 대상자 및 참석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		
평 가 방 법	–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매년 3회 이상 실시 “10” –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“6” –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매년 1회 미만 실시하거나, 미 실시 “2” – 고용부 신고인력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 ½ 이상 종사자 평가(계약직 포함) – 1회 기준 1일 1시간 이상(전체인력 80% 참석) – 평가기간 동안 교육을 1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(인적기준) : 배점 150점

A.2.3	학술대회 참여정도	
평가항목 A.2.3.5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산업보건분야 학술대회 참여정도	학술대회 참여가 적정한 경우	☐ 10
	학술대회 참여가 보통인 경우	☐ 6
	학술대회 참여가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학술대회 참석정도를 평가	
	<준비서류> 학술대회 참석증	
평 가 방 법	- 전체 인력의 50% 이상 참여 “10” - 전체 인력의 25% 이상 ~ 50% 미만 참여 “6” - 전체 인력의 25% 미만 참여 “2” - 학술대회 참여는 년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함(고용부 신고인력, 변경인력포함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(인적기준) : 배점 150점

A.2.3	소속인력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	
평가항목 A.2.3.6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검진기관 소속인력에 대한 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의 적정성	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적정함	☐ 10
	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보통임	☐ 6
	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미흡함	☐ 2
평 가 취 지	검진기관 소속인력에 대한 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소속된 모든 인력에 대해 검진을 실시함 “10” -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90% 이상 ~ 100% 미만에 대해 실시 “6” -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소속된 인력의 90% 미만에 대해 실시함 “2” - 건강진단대상자 선정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음(변경인력 포함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1	고성능 장비 추가 확보 및 유지, 관리의 적정성	취득 점수	신설
평가항목 A.3.1.1	평가기준 (배점 : 40)		평가결과
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고성능 장비의 확보 및 유지, 관리의 적정성	고성능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·관리되고 있다	☐	40
	선택검사 장비(중이검사기, 24시간 협압계 및 심전도계)를 확보하고,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·관리되고 있다	☐	24
	고성능 장비 및 선택검사 장비 미확보	☐	8
평 가 취 지	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을 위한 고성능 장비와 2차 선택 검사 장비의 확보 및 유지·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		
<준비서류> 고성능장비 구입, 장비유지관리 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			
평 가 방 법	- ICP/MS, 수은분석기, GC 검출기 추가 확보(MSD, ECD, NPD), 헤드스페이스 샘플러, HPLC 추가 확보 - 고성능 장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장비의 유지·관리가 적정 “40” - 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선택검사 장비를 확보하고 장비의 유지·관리가 적정 “24” -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24점 이하로 평가(위탁기관보다 한단계낮게) - 고성능 장비를 보유하였으나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한단계 하향평가(해당기기 분석실적 없는경우) - 타 부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및 2년미만 리스사용 불인정(측정분야 불인정장비 인정 가능)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	검사 및 분석장비 대장관리	
평가항목 A.3.2.1	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검사 및 분석 장비 대장 관리의 적절성	장비대장 관리가 적정한 경우	☐ 10	
	장비대장 관리가 보통인 경우	☐ 6	
	장비대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	☐ 2	
평 가 취 지		검사 및 분석장비 대장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는지 평가	
<준비서류> 분석장비현황, 분석장비 세부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			
평 가 방 법	- 모든 장비(시행규칙 별표14, 16종)의 대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“10” - 80% 이상의 장비의 대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“6” - 80% 미만의 장비의 대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“2” - 출장검진과 내원용 장비 구분하여 작성 - 모든 시료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(제외) : 항온수조, 저울, 광전광도계, AA, GC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흉부방사선 사진 촬영 시설, 장비의 유지보수(필름/스크린 시스템)	
평가항목 A.3.2.2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내부정도관리용 Densitometer측정	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·보수가 적정함	☐ 5
	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·보수가 보통임	☐ 3
	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·보수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흉부사진 화질향상을 위해서는 Densitometer를 실제 사용하여 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내부정도관리가 필요한 바, 유지보수의 적정여부 평가 <준비서류> 밀도계 측정기록대장(서명원칙, 도장불인정)	
평 가 방 법	- 모든 촬영 장비에 대해 주 1회 이상 Densitometer 측정하고 결과 기록유지 “5” - 모든 촬영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Densitometer 측정하고 결과 기록유지 “3” -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거나 월 1회 미만 측정하는 경우 “1” 적용 - 모든 촬영장비에 대하여 최소한 주1회 이상 측정 및 결과 기록 유지(차량장비 포함) - 필름/디지털 시스템 중 한가지 장비만 보유한 경우 A.3.2.3항과 동일하게 평가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흉부방사선 사진 촬영 시설, 장비의 유지보수(디지털 시스템)	
평가항목 A.3.2.3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, 흉부판독용 모니터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(디지털 시스템)	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·보수가 적정함	☐ 5
	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·보수가 보통임	☐ 3
	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·보수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흉부촬영 디지털 장비 (CR리더기, DR디텍터, 흉부판독용 모니터 등)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,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 적정여부 평가	
<준비서류> 유지보수 계약서 및 결과표,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(의용공학전공 자격, 제조사 교육 과정, 교육수료 증명서 등)		
평 가 방 법	- ① 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(6개월에 1회 이상) ② 흉부판독용 모니터(3월 1회 이상) : ①, ② 장비 모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결과표 비치 “5” - ① 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(연 1회 이상) ② 흉부판독용 모니터(6월 1회 이상) : ①, ② 장비 모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결과표 비치 “3” - ① 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(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음) ② 흉부판독용 모니터(6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음) : ① ② 장비중 하나만 실시하거나 모두 실시하지 않는 경우 “1” - 필름/디지털 시스템 중 한가지 장비만 보유한 경우 A.3.2.2항과 동일하게 평가 - 외부장비 업체에 의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결과표 비치, 검진기관 자체 유지보수 불인정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폐활량 검사기 보유 및 유지	
평가항목 A.3.2.4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적정한 장비보유 및 유지여부 확인	규격 사항 모두 만족	☐ 5
	규격 사항 일부 만족	☐ 3
	규격 사항 만족이 미흡	☐ 1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폐활량 검사기에 대한 현황 평가 <준비서류> 검사장비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	
평 가 방 법	- 규격 사항을 모두 만족 “5” - 규격 사항 중 50% 이상 (4가지 항목 이상) 만족 “3” - 규격 사항 중 50% 미만 (4가지 항목 미만) 만족 “1” - 사용중인 장비 규격 사항(매뉴얼 등)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(출장용 포함) - 규격: ①유속 및 용적 보정 ②1회용 필터체결 ③온도/습도/기압 입력 ④유량-용적곡선 및 용적-시간 곡선최소 3개이상 저장 ⑤예측치 선택가능 ⑥외삽용적 확인가능 ⑦일초량, 일초율, 노력성폐활량 등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폐활량 검사기 보정	
평가항목 A.3.2.5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폐활량 검사기 보정의 적절성 확인	폐활량 검사기 보정이 적정한 경우	☐ 5
	폐활량 검사기 보정이 보통인 경우	☐ 3
	폐활량 검사기 보정이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폐활량 검사기 보정현황 평가 <준비서류> 관련대장, 출력물, 전산자료 등	
평 가 방 법	- 평가방법의 조건(온도, 습도, 기압) 모두를 고려하여 보정 실시 “10” - 평가방법의 조건(온도, 습도, 기압) 중 일부만 고려하여 보정 실시 “6” - 보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“2” (검사 결과지와 보정 결과지 일시를 대조하여 불일치) - 폐활량 검사가 있는 날마다 검사전 1회 이상 실시 - 한단계 하향평가: 보정결과 장비별(S/N) 구분하지 않는 경우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폐활량 검사기 감염예방 조치	
평가항목 A.3.2.6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감염 예방을 위한 폐활량 검사기 소독 상태 확인	폐활량검사 장비의 감염예방 조치가 적정함	☐ 10
	폐활량검사 장비의 감염예방 조치가 보통임	☐ 6
	폐활량검사 장비의 감염예방 조치가 미흡함	☐ 2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검사 장비의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의 이행정도를 확인 평가 <준비서류> 장비소독대장 및 장비관련 사용 매뉴얼	
평 가 방 법	- 장비 소독 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있으며, 매뉴얼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소독 실시 “10” - 장비 소독 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있으나, 매뉴얼에서 정한 주기를 따르지 않고 소독 실시 “6” - 매뉴얼대로 소독을 하고 있지 않고, 대장을 미비치함 “2” - 한단계 하향평가: 소독관련 담당자 면담결과 매뉴얼 미숙지 또는 시연결과 부적정한 경우 - 내시경소독액, EO가스, 가정용 락스를 이용한 소독도 인정(매뉴얼에 따라 해당물질 사용금지 제외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	폐활량 검사시 일회용품 사용	
평가항목 A.3.2.7		평가기준 (배점 :5)	평가결과
적정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 및 일회용 코마개 사용	폐활량 검사 일회용품 사용이 적정함		☐ 5
	폐활량 검사 일회용품 사용이 보통임		☐ 3
	폐활량 검사 일회용품 사용이 미흡함		☐ 1
평 가 취 지		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확인 평가	
<준비서류>일회용 인라인 필터 성능성적서, 필터 구매확인 서류(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)			
평 가 방 법	- 적정함 : 성능 기준(성능성적서)에 따른 일회용 인라인 필터를 사용하고, 성능 성적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일회용 코마개를 사용하는 경우 “5” - 보통 : 성능 기준(성능성적서)에 미달하는 일회용 인라인 필터를 사용(성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)하는 경우 또는 일회용 코마개를 재사용하는 경우 “3” - 미흡 :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일회용 인라인 필터를 사용(성능성적서가 없는 경우) 하거나 일회용 인라인 필터 및 일회용 코마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“1” - 일회용 인라인 필터 적정 기준 항목 : ①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효율 ②유속 저항 ③ 사강 - 미흡평가(1점) : 성능기준 확인 불가, 성적서와 모델명 불일치, 유효기간 지난 필터 사용, 일회용 인라인 필터 및 일회용 코마개 구입수량 확인되지 않는 경우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	폐활량 검사실	
평가항목 A.3.2.8		평가기준 (배점 :10)	평가결과
폐활량 검사실의 적정성 확인	폐활량 검사 및 설비가 적정함		☐ 10
	폐활량 검사 및 설비가 보통임		☐ 6
	폐활량 검사 및 설비가 미흡함		☐ 2
평 가 취 지		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폐활량 검사실의 적정성을 평가	
<준비자료> 관련장비 사양서, 사용매뉴얼			
평 가 방 법	-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이 설치되고, 적절한 환기 및 소독 시설을 보유한 경우 “10”		
	-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이 설치되고, 환기 및 소독 시설을 일부 보유한 경우 “6”		
평 가 방 법	-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을 미보유한 경우 “2” (환기 및 소독시설 미보유)		
	- 환기설비 : 건물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의 창문 또는 별도의 환기설비(공조설비 불인정)		
평 가 방 법	- 소독시설 : 내부 자외선 살균장치(KOA AS01 또는 SC 102표준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)		
	등 소독시설 설치여부, 자외선 살균 등 공기청정기 또는 단순 공기정화 살균기 불인정		
※ 살균장치성능(부유세균 80%이상제거 및 살균, 램프폐쇄형, 검사수행기간동안 계속 가동 할 수 있는 공기순환형)	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청력 검사실 및 부스	
평가항목 A.3.2.9	평가기준 (배점 :10)	평가결과
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 성능 확인	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성능이 양호한 경우	☐ 10
	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성능이 보통인 경우	☐ 6
	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성능이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청력검사실과 오디오부스 성능을 평가	
<준비자료> 청력검사장비 성적서		
평 가 방 법	- 청력검사실에 별도의 오디오 부스를 갖추고 있으며, 부스의 차폐성능이 양호한 경우 “10” - 청력검사실에 별도의 오디오 부스를 갖추고 있으나, 부스의 차폐성능이 보통인 경우 “6” - 청력검사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 “2” - 검사실은 다른 장소와 구분이 되어있고 사방이 막혀 출입문으로 출입하는 구조 - 오디오 부스는 일정간격 벽과 떨어져 있어야 함 - 한단계 하향평가 : 정기적(년1회 이상) 내,외부 배경소음을 측정하여 기록, 유지 않은 경우 (오디오부스 내부만 실시 인정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청력 검사기 보정점검	
평가항목 A.3.2.10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청력검사기의 보정점검 실시 여부 확인 (최근 1년 이내)	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적정한 경우	☐ 5
	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보통인 경우	☐ 3
	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청력검사기의 보정점검 실시여부 평가	
<준비자료> 기능보정 점검 일지 및 음향보정점검 또는 정밀보정 점검 보고서		
평 가 방 법	— 기능보정과 음향보정점검을 모두 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“5” — 기능보정과 음향보정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“3” — 기능보정과 음향보정 중 한 분야라도 보정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“1” — 기능보정점검은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날마다 점검 실시 여부 확인(미실시 하거나 담당자 서명 누락 미흡 평가) — 음향보정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외부업체가 실시한 점검 보고서 확인 — 음향보정점검표에 기입된 청력검사장비의 S/N와 실제 사용중인 장비와 다를 경우 : 미흡 평가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	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사용 대장	
평가항목 A.3.2.11	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분석 장비별 장비 사용 대장 평가	장비 사용대장 작성 및 관리가 적정한 경우		☐ 5
	장비 사용대장 작성 및 관리가 보통인 경우		☐ 3
	장비 사용대장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한 경우		☐ 1
평 가 취 지		분석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분석장비의 상태, 분석량, 분석물질 등의 정보관리상태를 평가	
<준비서류> 분석장비(AA, GC, HPLC) 사용 대장			
평 가 방 법		- 장비사용대장을 분석실 내에 비치하고 작성하는 등 양호하게 활용하고 있음 “5” - 장비사용대장을 비치하였으나 기록상태가 일부 미흡함 “3” - 장비사용대장을 비치하지 않음 “1” -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 점수 반영(2곳 이상은 낮은점수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진단검사 시료저장의 적절성	
평가항목 A.3.2.12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진단검사 시료저장 과정의 적절성 파악 (A.1.1.4의 실행여부)	진단검사 시료저장 방법이 적정한 경우	☐ 5
	진단검사 시료저장 방법이 보통인 경우	☐ 3
	진단검사 시료저장 방법이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진단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, 보관, 운반 등의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평가하여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(A1.1.4의 지침서에서 정한 내용 이행 정도 평가) <준비서류> 시료채취 대장, 시료의뢰 대장 등	
평 가 방 법	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의 80% 이상이 적정한 경우 “5” 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의 50%이상~80% 미만이 적정한 경우 “3” 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의 50% 미만이 적정한 경우 “1” - 평가대상 선정 : 혈액, 소변채취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 10개소 선정 평가(필요시 사업장 유선통화 실시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	폐기를 처리	
평가항목 A.3.2.13	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분석 중 배액(폐액) 및 생체시료 폐기물 처리 방법의 적정 여부	폐기물 처리방법이 적정함		☐ 5
	폐기물 처리방법이 보통임		☐ 3
	폐기물 처리방법이 미흡함		☐ 1
평 가 취 지		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로 인한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노력 정도를 평가	
<준비자료> 폐기를 위탁처리 계약서, 처리실적 등			
평 가 방 법		-기관에 별도의 처리설비가 있거나, 폐기물 수거통이 별도로 있고 외부업체에 처리의뢰 실적 있음 “5” -폐기물 수거통이 있으나, 평가기간 동안 외부업체에 처리의뢰 실적이 없는 경우 “3” -폐기물 수거통이 없고, 관련 처리실적도 없는 경우 “1” -한단계 하향평가 : 폐기물 수거통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복도 및 계단 등에 무질서 하게 방치 -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비상용 샤워 및 세안설비 설치	
평가항목 A.3.2.14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 설치 여부	모든 설비가 적정함	☐ 10
	일부 설비가 적정함	☐ 6
	모든 설비가 미흡함	☐ 2
평 가 취 지	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되어 신체에 접촉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를 이용함으로서 실험실 종사자의 사고 및 건강장애 예방 노력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, 작동상태 양호 “10” -비상용 샤워장치 또는 세안설비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며, 작동상태 양호 “6” -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모두 보유(설치)하지 않은 경우 “2” -한단계 하향 평가 : 즉시 사용할수 있는 장소 미설치, 정상작동 않는 경우 -세안설비 불인정 : 이동식 세안키트, 싱크대, 세면대, 가까운 화장실 등 -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가스용기 전도 방지장치 및 저장	
평가항목 A.3.2.15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여부	가스용기 전도 방지조치와 저장이 적정함	☐ 5
	가스용기 전도 방지조치와 저장이 보통임	☐ 3
	가스용기 전도 방지 조치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가스 용기가 전도될 경우 폭발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고 별도의 공간에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음 “5” -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고 별도의 공간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 “3” (별도의 공간에 저장하였으나,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) -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지 않는 경우 “1” -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-실험실 내부 칸막이 설치는 별도 저장공간으로 불인정(외부 고압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공급되는 경우 적정한 것으로 평가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분석용 시약 보관상태	
평가항목 A.3.2.16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분석용 시약 보관 상태 평가	시약 보관상태가 적정함	☐ 5
	시약 보관상태가 보통임	☐ 3
	시약 보관상태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약을 적정하게 보관 하여야 실험실 내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실험실 종사자가 이를 흡입함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또는 보건상의 문제, 교차오염에 대한 방지 노력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시약 보관용 전용설비 (필터설비가 설치된 시약장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시약장)에 보관함 “5” -시약 보관용 전용설비는 없으나, 실험실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약을 보관함 “3” -별도 설비 없이 실험실 내에 시약을 보관함 “1” (일반약장 보관, 시약장 내 음식물 보관) -한단계 하향 평가 : 제조사 교체주기내 교체 미실시, 유효기간 지난 시약 보관 -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기관 평가점수 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분석장비 국소배기장치	
평가항목 A.3.2.17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분석 장비별 국소배기장치 확인	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적정함	☐ 5
	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보통임	☐ 3
	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유기화합물과 금속을 취급하는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실태를 파악하고 제어풍속을 확인하는 등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노력 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고 설치위치나 성능 적정 “5” -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가동이 되나, 설치위치나 성능보완이 필요한 경우 “3” -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장비를 가동하는 경우 “1” -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- 폼후드의 적정 제어풍속 유지(0.4m/s 이상), 슬라이드 높이 30cm 개방해서 측정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보호용구 구비	
평가항목 A.3.2.18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	보호용 구비가 적정한 경우	☐ 5
	보호용 구비가 보통인 경우	☐ 3
	보호용 구비가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해당 보호용구를 착용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(분석사 등)의 안전사고 및 건강 장애 발생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모든 보호용구를 실험실 근무인원수에 맞도록 구비하고 있는 경우 “5” -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나, 보유개수가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“3” - 일부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거나 상태가 미흡한 경우 “1” - 보호용구 : 보안경, 방독마스크, 방진마스크, 불침투성(내화학성) 장갑, 실험복 - 한단계 하향평가 : 보호구 전용 보관함 미구비(실험실 서랍장) -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냉장보관 설비	
평가항목 A.3.2.19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냉장고, 이동식 보관장비 활용 여부	냉장보관 장비가 적정한 경우	☐ 5
	냉장보관 장비가 보통인 경우	☐ 3
	보호용 구비가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의료운반과 보관은 냉장설비가 반드시 있어야하며, 이러한 냉장설비에 검체 이외에 각종시약, 음식물, 음료 등을 보관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실험실에 냉장고가 있고 출장검진 시 사용하는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관리가 적정함 “5” - 냉장고가 있고 출장검진 시 사용하는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가 있으나 관리가 부적절함 “3” (또는 실험실에 냉장고가 없으나 출장검진 시 사용하는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) - 실험실에 냉장고가 없거나 출장검진 시 활용하는 아이스박스가 없음 “1” - 냉장고 내부 음료나 음식물 발견되는 경우 : 미흡으로 평가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	
평가항목 A.3.2.20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기 활용 여부	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이 적정한 경우	☐ 5
	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이 보통인 경우	☐ 3
	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이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 냉장보관해야 하며, 출장검진시 혈청을 적절하게 보관하는지 여부를 평가 <준비서류> 출장검진 장비사용대장	
평 가 방 법	- 출장 검진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, 출장 검진시에는 항상 사용하고 있음 “5” - 출장 검진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, 출장 검진시 사용하지 않음 “3” - 출장 검진용 원심분리기 없음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: 배점 170점

A.3.2	저울 검정 및 교정	
평가항목 A.3.2.21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저울 검정 및 교정 평가	저울 검정 및 교정 실시상태가 적정한 경우	☐ 5
	저울 검정 및 교정 실시상태가 보통인 경우	☐ 3
	저울 검정 및 교정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표준용액 등의 시약 제조시 저울을 이용한 계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석오차가 증가하게 되므로 저울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실시정도를 평가	
<준비서류> 저울 검교정 대장, 검교정 성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		
평 가 방 법	- 보유중인 모든 저울에 대한 검정 및 교정 실시 “5” - 보유중인 일부 저울에 대한 검정 및 교정 실시 “3” - 보유중인 모든 저울에 대한 검정 및 교정 미실시 “1” - 기관의 검교정 주기에 맞도록 실시 여부 확인 (최대 3년까지 인정) - 한단계 하향평가: 정확한 중량분석을 위한 무진동테이블 미설치 -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 점수 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4 정부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: -80 ~ +10

A.4.1	산업보건관련 포상 수여 실적	취득 점수	신설
평가항목 A.4.1	평가기준 (가점 : 최대 +10점)		평가결과
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	① 대통령상 : ____건 x 5점 = ____점 ② 국무총리상 : ____건 x 4점 = ____점 ③ 고용부장관상 : ____건 x 3점 = ____점 ④ 안전공단 이사장상 : ____건 x 2점 = ____점 ⑤ 노동청, 지사장, 지자체, 민간단체장상 : ____건 x 1점 = ____점 총 점 : ①+②+③+④+⑤ = ____점(최대 10점)		____점
평 가 취 지	산업보건관련 포상실적 적용 <준비사항> 포상관련 증빙서류		
평 가 방 법	평가기간 내 포상 실적 평가 평가 당일 피평가 기관에서 제출한 포상 수여 실적을 확인 민간단체상(산업보건분야 학회에 한함) : 직업환경의학회, 한국산업보건학회, 한국직업 건강간호학회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: -80 ~ +10

A.4.2	업무정지 처분	취득 점수	신설
평가항목 A.4.2	평가기준 (감점 : 최대 -80점)		평가결과
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업무정지 처분 ____개월 × -15점 = ____점 총점 : _____점(최대 -80점)		____점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평가		
평 가 방 법	- (준비사항) 업무정지 처분 관련 공문 - 평가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 실적 평가 - 업무정지 개월 수(월단위로 환산) 당 15점 감점, 최대 80점 감점 - 예시) 업무정지 6개월 × -15점 = -90점(-80점 적용)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: -80 ~ +10

A.4.3	시정조치·경고 처분	취득 점수	신설
평가항목 A.4.3	평가기준 (감점 : 최대 -20점)		평가결과
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시정조치·경고 처분 ____건 × -2점 = ____점 총점 : ____점(최대 -20점)		____점
평 가 취 지	특수건강검진기관의 시정조치·경고 처분에 대한 평가		
평 가 방 법	- (준비사항) 시정 및 경고 처분 관련 공문 - 평가기간 내 시정조치 및 경고 처분 실적 평가 - 시정조치 및 경고 처분 건수별 2점 감점, 최대 20점 감점 - 예시) 처분건수 5건 × -2점 = -10점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A.5 종합화 : +5 ~ +10

A.5.1	종합기술지원(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)	취득 점수	신설															
평가항목 A.5.1	평가기준 (가점 : 최대 +10점)		평가결과															
종합기술지원 (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)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4회 이상</th><th>3회</th><th>2회</th><th>1회</th></tr><tr><td>① 사전조사</td><td>+5점</td><td>+4점</td><td>+3점</td><td>+2점</td></tr><tr><td>② 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</td><td>+5점</td><td>+4점</td><td>+3점</td><td>+2점</td></tr></table>	구 분	4회 이상	3회	2회	1회	① 사전조사	+5점	+4점	+3점	+2점	② 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	+5점	+4점	+3점	+2점	_____점	
구 분	4회 이상	3회	2회	1회														
① 사전조사	+5점	+4점	+3점	+2점														
② 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	+5점	+4점	+3점	+2점														
평 가 취 지	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사전조사, 사 후관리조치 및 작업환경개선 등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																	
<준비사항> 컨소시엄 관련 종합기술지원 증빙서류																		
평 가 방 법	- 동일기관 내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부서 (기준 50% 적용)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후 사 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 - 평가기간 동안 ①사전조사(신규 특검 실시 대상), ②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(직업성질환 C₁, D₁, 야간작업 C_N, D_N 대상)의 실적별 점수를 합산 -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, 미실시한 경우 동 평가항목을 0점 처리 - 종합기술지원 관련 협조체계 및 실적은 문서화 되어야하며, 시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																	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 업무성과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 점

B.1.1	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1.1	평가기준 (배점 : 30)		평가결과
특검대상자 선정 등 사전 조사절차 보유 여부	사전조사 절차가 적정한 경우	☐	30
	사전조사 절차가 보통인 경우	☐	18
	사전조사 절차가 미흡한 경우	☐	6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(대상업무 및 대상자 선정)에 관한 특검기관 내부의 표준운영절차 확립과 교육(훈련) 정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		
평 가 방 법	- 사전조사 검토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고 담당자가 숙지한 경우 “30” - 사전조사 검토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고 담당자가 미숙지한 경우 “18” - 사전조사 검토 절차가 문서화 되지 않은 경우 “6” - 사전조사 절차의 문서화 및 내용의 적정성, 표준절차 숙지, 의사면담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 점

B.1.1	사전조사 절차 실행 여부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1.2	평가기준 (배점 : 40)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행과정의 적절성 파악 (B.1.1.1 실행여부)	사전조사 실행과정이 적정한 경우	☐ 40
	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보통인 경우	☐ 24
	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미흡한 경우	☐ 8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에 관한 기관내부의 표준운영절차가 현장에서 유효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의 80% 이상이 적정한 경우 “40” 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의 50% 이상~80% 미만이 적정한 경우 “24” 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의 50% 미만이 적정한 경우 “8” - 평가대상 사업장 선정(무작위 20개소 이내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2	문진의 적정성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2.1	평가기준 (배점 : 20)		평가결과
문진표, 개인표 등을 통한 과거 직력, 문진, 시진 검사 여부 확인	문진과정이 적정한 경우	☐	20
	문진과정이 보통인 경우	☐	12
	문진과정이 미흡한 경우	☐	4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(수검자)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진찰(문진) 과정에서 근로자(수검자)와 의사와의 의사소통 등 문진부분을 평가		
평 가 방 법	-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80% 이상이 적정한 경우 “20” -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50%이상~80%미만이 적정한 경우 “12” -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50% 미만이 적정한 경우 “4” - 40명 내외 차트를 선정하여 적정성 평가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2	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2.2	평가기준 (배점 : 20)	평가결과	
문진표 확인 등을 통한 이학적 검사 실시유무와 시행의 적절성 평가	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양호한 경우	☐ 20	
	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보통인 경우	☐ 12	
	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미흡한 경우	☐ 4	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(수검자)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적절한 이학적 검사수준 평가		
평 가 방 법	-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80% 이상이 있는 경우 “20” -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% 이상이 있는 경우 “14” -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% 미만이 있는 경우 “4” - 40명 내외 차트를 선정하여 유해인자별 이경검사, 통각, 진동각, 악력청진, 시진 비강 및 인두검사, 레이노 현상진찰, 안과 진찰 등 기록 확인		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3	청력검사 불일치성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3.1	평가기준 (배점 : 20)		평가결과
청력검사결과 의 불일치 여부 확인	청력검사결과 불일치 여부가 양호한 경우	☐	20
	청력검사결과 불일치 여부가 보통인 경우	☐	12
	청력검사결과 불일치 여부가 미흡한 경우	☐	4
평 가 취 지	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측정함으로써, 해당 검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(수준)평가		
평 가 방 법	- 조사 결과 불일치 결과가 10% 미만 “20” - 조사 대상 근로자의 20% 미만 불일치 “12” - 조사 대상 근로자의 20% 이상 불일치 “4” - 소음관련 2차 특검 실시 근로자 총 20명 선정하여 과거 2회 이상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불일치성(좌우를 막론하고 전체 주파수별 청력검사결과 중 단 한 개라도 10dB 이상 좋아진 경우) 조사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3	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3.2	평가기준 (배점 : 20)		평가결과
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확인	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모두 적절한 경우	☐ 20	
	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보통인 경우	☐ 12	
	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미흡한 경우	☐ 4	
평 가 취 지	청력검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실제 검사시기를 확인 함으로써, 해당 검진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질(수준)평가		
평 가 방 법	- 조사 대상 2개 사업장(부서) 모두 적절 “20” 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 중 1개소만 적절 “12” - 조사 대상 사업장(부서) 모두 부적절 “4” - 최근 정밀청력검사 시행한 사업장 2개소 선정하여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 경과 후 실시 가능함을 해당 사업장에 안내를 통보여부 확인(안내자료, 문서 등) - 적절의 의미 : 안내 및 검사시기 모두 적절한 경우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4	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4.1	평가기준 (배점 : 20)	평가결과	
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를 위한 지침서 보유 여부	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적정한 경우	☐	20
	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보통인 경우	☐	12
	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미흡한 경우	☐	4
평 가 취 지	생물학적 노출지표는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이나 생물학적 노출지표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기, 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바, 특수건강진단의 질(수준)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관 자체 내부지침 보유여부 확인		
평 가 방 법	- 내부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“20” - 공단 지침 등 외부기관의 지침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지침은 없는 경우 “12” - 지침서가 모두 없는 경우 “4” (문서화 되지 않음) - 지침서 내용 : 시료채취에 대한 업무분장, 채취시기 및 방법, 수거 방법, 보관방법, 의뢰방법, 사업장 안내 사항 등 포함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4	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4.2	평가기준 (배점 : 20)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요원이	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적절한 경우	☐ 20
사업장방문후직접	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보통인 경우	☐ 12
시료채취여부및채취 시간적정여부확인	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부적절한 경우	☐ 4
평 가 취 지	생물학적 노출지표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방법 적정성을 확인 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(수준) 평가	
평 가 방 법	- 조사대상 사업장의 기록이 모두 적정하며, 유선으로 통화한 2개 사업장 모두 적정 “20” - 조사대상 사업장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, 유선으로 통화한 1개 사업장만 적정 “12” - 조사대상 사업장의 시료채취 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, 유선으로 통화한 사업장 모두 부적정 “4” - 최근 2년동안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한 사업장 10개소 선정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5	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5.1	평가기준 (배점 : 25)		평가결과
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의 적정성	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적정함	☐	25
	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보통임	☐	15
	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미흡함	☐	5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결과판정의 프로세스가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(A, C, D 판정자 등으로 40명 내외 선정) <준비자료> 기관이 작성한 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 지침서		
평 가 방 법	-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(근로자수)가 5% 미만 “25” -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(근로자수)가 5% 이상 ~10%미만 “15” -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(근로자수)가 10% 이상 “5” (문서화 되지 않음) - 지침서 : 임상 참고치, 이상징후, 노출추정, 관찰, 생물학적 노출지표, 문진, 작업 환경측정결과 등을 고려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구성(공단외의 실무지침 아님) - 적합 : 결과판정은 지침에 따라 관련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판정한 경우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5	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5.2	평가기준 (배점 : 25)	평가결과
업무관련성 평가 (C1,C2,C _N , D1,D2,D _N) 방법의 적정성 여부	업무관련성 평가(판정)가 양호함	☐ 25
	업무관련성 평가(판정)가 보통임	☐ 15
	업무관련성 평가(판정)가 미흡함	☐ 5
평 가 취 지	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	
평 가 방 법	-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(근로자수)가 5% 미만 “25” -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(근로자수)가 5% 이상 ~10% 미만 “15” -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(근로자수)가 10% 이상 “5” (지침서 미보유 및 비문서화) - 평가 대상자 : B.1.5.1항목에서 선정된 수검자 - 적 합 : 작업환경측정결과, 작업행태 관찰, 문진 결과를 모두 활용해 판정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5	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	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5.3	평가기준 (배점 : 25)	평가결과	
업무적합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여부	업무 적합성 평가가 양호함	☐ 25	
	업무 적합성 평가가 보통임	☐ 15	
	업무 적합성 평가가 미흡함	☐ 5	
평 가 취 지	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		
<준비자료> 기관에서 보유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서			
평 가 방 법	-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(적정성 80%이상) “25” -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함(적정성 50% 이상) “15” -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(적정성 50%미만) “5” -평가 대상자 : B.1.5.1.항목에서 선정된 수검자 -지침을 미보유 하거나 문서화 되지 않은 경우 : 미흡으로 평가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B.1.5	검사항목의 적절성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5.4	평가기준 (배점 : 25)	평가결과
검사항목의 적절성	검사항목의 선정이 적정한 경우	☐ 25
	검사항목의 선정이 보통인 경우	☐ 15
	검사항목의 선정이 미흡한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검사항목 적정 실시 여부 확인	
평 가 방 법	-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고,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 사유가 모두 기록 “25” -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, 미실시 사유 기록 80% 이상 작성 “15” -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, 미실시 사유 기록 80% 미만 작성 “5” - 평가대상자 : B.1.5.1항목에서 선정된 수검자 - 검사항목 : 1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수, 2차 검사항목 중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“필요시 실시하는 항목” 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 검사임(검사항목 미실시한 경우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)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: 배점 310점

신설

B.1.6	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	취득 점수	외부 전문가 평가(의사)
평가항목 B.1.6.1	평가기준 (배점 : 20)	평가결과	
2차 검사 대상자에게 해당검사를 적절하게 실시토록 유도 여부 평가	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적정한 경우	☐ 20	
	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보통인 경우	☐ 12	
	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미흡한 경우	☐ 4	
평 가 취 지	2차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해당 검사를 실시토록 유도하여 적절한 건강관리구분 판정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지 평가		
평 가 방 법	- 2차 검사 실시 안내 공문 수신율이 90% 이상 “20” - 2차 검사 실시 안내 공문 수신율이 70% 이상 ~ 90% 미만 “12” - 2차 검사 실시 안내 공문 수신율이 70% 미만 “4” - 평가대상 : U판정(판정불가)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0개소 선정 - 사업장 보건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유선 확인(공문 수신) - 필수기록 : 확인 날짜, 사업장 담당자, 기관 담당자, 2차검사 미실시 사유 등 - 한단계 하향평가 : 기록문서가 없거나, 필수사항 누락, 평가기간 50% 미만 작성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	취득 점수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1	평가기준 (배점 : 2.5)		평가결과
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견갑골이 폐야 밖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	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가 적정함	☐	2.5
	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가 보통임	☐	1.5
	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가 미흡함	☐	0.5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함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%이상에서 폐야 밖 위치 "2.5"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이상~80%미만에서 폐야 밖 위치 "1.5"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미만에서 폐야 밖 위치 "0.5"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2	평가기준 (배점 : 2.5)	평가결과
흉부방사선 사진의 정상흡기 정도를 쇄골중심부에서 수직선을 그어 그 선이 우측횡경막과 만나는 점이 제10 늑골 후방의 하연보다 낮은지 평가	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가 적정함	☐ 2.5
	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가 보통임	☐ 1.5
	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가 미흡함	☐ 0.5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%이상에서 낮음 “2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이상~80%미만에서 낮음 “1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미만에서 낮음 “0.5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흉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3	평가기준 (배점 : 2.5)	평가결과
흉부방사선 사진의 우측폐야 전체에서 폐혈관의 관찰이 폐야 외측 1/3부위의 폐혈관까지 관찰이 가능한지 평가	흉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 · 해상도 · 대조도가 적정함	☐ 2.5
	흉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 · 해상도 · 대조도가 보통임	☐ 1.5
	흉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 · 해상도 · 대조도가 미흡함	☐ 0.5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%이상에서 관찰이 가능함 “2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이상~80%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 “1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 “0.5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흉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4	평가기준 (배점 : 2.5)	
흉부방사선 사진의 좌측폐야 전체에서 폐혈관의 관찰이 폐야 외측 1/3부위의 폐혈관까지 관찰이 가능한지 평가	흉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 · 해상도 · 대조도가 적정함	☐ 2.5
	흉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 · 해상도 · 대조도가 보통임	☐ 1.5
	흉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 · 해상도 · 대조도가 미흡함	☐ 0.5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%이상에서 관찰이 가능함 “2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이상~80%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 “1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 “0.5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 상태, 해상도, 대조도 정도 관리 결과 활용	
평가항목 B.2.1.5	평가기준 (배점 : 2.5)	평가결과
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대동맥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	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 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적정함	☐ 2.5
	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 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보통임	☐ 1.5
	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 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미흡함	☐ 0.5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%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"2.5"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이상~80%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"1.5"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"0.5"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횡격막 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6	평가기준 (배점 : 2.5)	평가결과
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하방 혈관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	횡격막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적정함	☐ 2.5
	횡격막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보통임	☐ 1.5
	횡격막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미흡함	☐ 0.5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 촬영 및 원외 촬영 모두 합하여 80% 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“2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 촬영 및 원외 촬영 모두 합하여 60% 이상~80% 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“1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 촬영 및 원외 촬영 모두 합하여 60% 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“0.5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횡격막 양측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	취득 점수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7	평가기준 (배점 : 2.5)		평가결과
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양측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	횡격막 양측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적정함	☐ 2.5	
	횡격막 양측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보통임	☐ 1.5	
	횡격막 양측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미흡함	☐ 0.5	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%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“2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이상~80%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“1.5”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“0.5”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8	평가기준 (배점 : 2.5)	평가결과
흉부방사선사진에서 전체추간판공간이잘 보이는지평가	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적정함	☐ 2.5
	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보통임	☐ 1.5
	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, 해상도, 대조도가 미흡함	☐ 0.5
평 가 취 지	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%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"2.5"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이상~80%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"1.5" -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%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"0.5"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폐활량 검사 설문(환류)기록 파악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9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설문(환류)기록으로 과거의 질환 여부 등 의 참고사항을 파악 하는지 평가	폐활량 검사 설문(환류)기록 파악이 적정함	☐ 5
	폐활량 검사 설문(환류)기록 파악이 보통임	☐ 3
	폐활량 검사 설문(환류)기록 파악이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 판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이 기관의 상황에 적절한 설문기록 활용여부 확인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참고사항 내용 모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“5” - 참고사항 내용 60% 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“3” - 참고사항 내용 60% 미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거나, 파악하지 않는 경우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10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검사 실시 횟수	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가 적정함	☐ 5
	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가 보통임	☐ 3
	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표준 검사방법을 활용한 반복실시여부 확인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모두가 적절한 경우 “5” 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% 이상(예: 10건 중 6건 이상) 적절한 경우 “3” 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% 미만(예: 10건 중 6건 이하) 적절한 경우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11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폐활량 검사의 적합성 평가	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가 적정함	☐ 5
	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가 보통임	☐ 3
	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 검사방법에 따른 적합한 검사과정 및 검사결과 확인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모두가 적절한 경우 “5” 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% 이상(예: 10건 중 6건 이상) 적절한 경우 “3” 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% 미만(예: 10건 중 6건 미만) 적절한 경우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1	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1.12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가장 큰 수치의 결과값 (노력성 폐활량 및 일 초량)과 다음 결과값의 차이, 3회 이상의 검사기록	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가 적정함	☐ 5
	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가 보통임	☐ 3
	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 검사방법으로 반복하여 실시한 검사결과의 재현성 확인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모두가 적절한 경우 “5” 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% 이상(예: 10건 중 6건 이상) 적절한 경우 “3” -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% 미만(예: 10건 중 6건 미만) 적절한 경우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2	청력 2차 검사 시행	취득 점수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2.1	평가기준 (배점 : 5)		평가결과
2차 순음청력검사 시행의 적정성 평가	청력 2차 검사 시행이 적정함	☐ 5	
	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보통임	☐ 3	
	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미흡함	☐ 1	
평 가 취 지	2차 순음청력검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	
평 가 방 법	- 2차 검사 대상자에 대한 2차 검사 전원 실시 “5” - 2차 검사를 전원 실시하였으나 일부 청력검사 항목이 누락 “3” - 1명 이상 2차 검사 미실시 “1”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2	골도 청력검사 수행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2.2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2차 순음청력검사 에서 각 주파수별 기도 역치에 따른 골도청력검사 실 시의 적정성 평가	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적정함	☐ 5
	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보통임	☐ 3
	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각 주파수별 기도 역치에 따른 골도청력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100%에서 골도청력 검사를 적절히 수행 “5” 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80% 이상에서 골도청력 검사를 적절히 수행 “3” 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80% 미만에서 골도청력 검사를 적절히 수행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B.2.2	기도 음차폐 검사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2.3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2차 순음청력검사 에서 좌우 기도청 력 차폐검사 실시 의 적정성 평가	기도 음차폐 검사가 적정함	☐ 5
	기도 음차폐 검사가 보통임	☐ 3
	기도 음차폐 검사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기도청력 차폐검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에서 100%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“5” 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에서 80% 이상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“3” 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에서 80% 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: 배점 100점

**정도 관리
결과 활용**

B.2.2	골도 음차폐 검사	
평가항목 B.2.2.4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기도청력 차폐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	골도 음차폐 검사가 적정함	☐ 5
	골도 음차폐 검사가 보통임	☐ 3
	골도 음차폐 검사가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골도 음차폐 검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평가 -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
평 가 방 법	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에서 100%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“5” 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에서 80% 이상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“3” -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에서 80% 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능력 : 배점 100점

B.2.3	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	취득 점수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3.1	평가기준 (배점 : 5)	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분석 석정도관리 분석 값 설명 자료 검 토 결과 평가	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가 적정함	☐ 5	
	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가 보통임	☐ 3	
	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가 미흡함	☐ 1	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시 분석결과 산출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분석결 과의 타당성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분석능력 향상 유도 - 최근 2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	
평 가 방 법	- 최근 2회 분석정도관리(분석값) 결과 평균 100점 “5” - 최근 2회 분석정도관리(분석값) 결과 평균 60점 이상 100점 미만 “3” - 최근 2회 분석정도관리(분석값) 결과 평균 60점 미만 “1”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능력 : 배점 100점

B.2.3		내부정도관리	
평가항목 B.2.3.2	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기관 자체 수행 분석 평가	내부정도관리가 적정함		☐ 5
	내부정도관리가 보통임		☐ 3
	내부정도관리가 미흡함		☐ 1
평 가 취 지		특수건강진단 분석 에 대한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분석능력 향상 유도	
<준비서류> 내부정도관리 지침 및 대장, 분석결과보고 서류			
평 가 방 법		- 내부정도관리 지침이 비치되어 있고 지침대로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함 “5” - 내부정도관리 지침은 비치되어 있으나 내부정도관리가 부적정 “3” (필수항목 누락) - 내부정도관리 지침 미비치 또는 내부정도관리 미실시 “1” (지침 비문서화) - 내부정도관리 지침 필수항목 : 개정일시, 운영체계, 관리책임자, 정도관리절차, 결과 처리방법 - 한단계 하향평가 : 다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① 내부정도관리용 표준시료 ② 기관 자체 제조시료 ③ 내부정도관리 대장 : 기준값과 비교한 정확도를 기록한 대장 - 분석결과데이터 중 랜덤 5개 이하 대장에 기록된 분석값과 일치 확인(불일치 미흡평가) -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: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능력 : 배점 100점

B.2.3	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	
평가항목 B.2.3.3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임상정도관리 참가 결과 평가	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이 적정함	☐ 5
	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이 보통임	☐ 3
	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이 미흡함	☐ 1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임상검사에 대한 질관리를 위하여 임상정도관리 중 ①임상화학(일반화학), ②진단혈액학, ③면역혈청학, ④요경검학, ⑤면역측정검사 분야의 정도관리에 참가한 실적을 확인 하여 수준향상 유도	
	<준비서류> 임상정도관리 결과 통보 서류	
평 가 방 법	- 5개 분야 모두 참가 “5” - 5개 분야 중 일부만 참가 “3” - 임상정도관리 미실시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능력 : 배점 100점

B.2.3	검체의 외부 의뢰체계 구축	
평가항목 B.2.3.4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검체의 외부의뢰 체계구축의 적절성 여부확인	검사 외부 의뢰체계가 적정한 경우	☐ 5
	검사 외부 의뢰체계가 보통인 경우	☐ 3
	검사 외부 의뢰체계가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검체의 외부의뢰 체계구축의 적절성 여부 평가	
	<준비서류> 검체외부 의뢰 계약서, 검사 의뢰서 및 결과 통보서	
평 가 방 법	- 검체에 대한 외부 의뢰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거나 모든 검사를 내부에서 처리 “5” - (실제적으로 일부검체에 대하여 외부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)검체에 대한 외부 의뢰 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의뢰검사 기록지 등의 관련 서류가 미흡 “3” - (실제적으로 일부검체에 대하여 외부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)검체에 대한 외부 의뢰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“1” (의뢰시스템 구축 문서화 미이행) - 고용부에 특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특검항목 검사의뢰 불가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능력 : 배점 100점

B.2.4	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	취득 점수	정도 관리 결과 활용
평가항목 B.2.4.1	평가기준 (배점 : 20)	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결과 평가	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가 적정함	☐	20
	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가 보통임	☐	12
	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가 미흡함	☐	4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지정항목 이외에도 선택항목에 대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,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유도 - 최근 2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(공단 연구원 자료) 활용		
평 가 방 법	- 최근 2회 종합 선택항목 적합 4개 이상 “20” - 최근 2회 종합 선택항목 적합 3개 “12” - 최근 2회 종합 선택항목 적합 2개 “4” - 무기분석 선택항목(4종) : 혈중 카드뮴, 혈중 망간, 요중 수은, 요중 카드뮴 - 유기분석 선택항목(9종) : 요중 만델산, 요중 페닐글리옥실산, 요중 총메틸마노산, 요중NMF, 요중 삼염화초산, 요중 총삼염화물, 요중 듀콘산, 요중 2,5-헥산디온, 요중 NMAC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3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발굴률 : 배점 50점

B.3.1	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률	취득 점수	신설
평가항목 B.3.1.1	평가기준 (배점 : 50)	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제도권 유입을 위한 신규발굴률 평가	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40% 이상		☐ 50
	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30% 이상 ~ 40% 미만		☐ 40
	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20% 이상 ~ 30% 미만		☐ 30
	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20% 미만		☐ 20
	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0%		☐ 10
평 가 취 지	기초 산업보건제도인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이행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권 유입이 취약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발굴율을 평가		
평 가 방 법	- 평가기간 내(17.5~18.12) 20인 미만 특검 실시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비율 평가 - 신규발굴율 = (17년 신규사업장 비율 + 18년 신규사업장 비율) / 2 - 신규사업장 : 최근 3년 이내(14년~16년) 특검 미실시 사업장 -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, 총 득점그룹별 평균점수 적용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4 고객만족(수검사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 : 배점 80점

B.4.1	특수건강진단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	취득 점수	
평가항목 B.4.1.1	평가기준 (배점 : 20)	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수 준향상을 위한 내 부 위원회 설치 등 개선활동	개선활동 노력이 적정한 경우	☐	20
	개선활동 노력이 보통인 경우	☐	12
	개선활동 노력이 미흡한 경우	☐	4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수준향상을 위한 내부 위원회 설치 등 개선활동 정도를 평가		
평 가 방 법	-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, 개선활동에 따른 기록이 있음 “20” -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고, 개선활동이 없는 경우 “12” - 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고, 개선활동이 없는 경우 “4” (비문서화) - 한단계 하향평가 : 위원회 개최 실적(외부위원 참석) 연 1회인 경우		
차기 평가 (예정)	-사업장 담당자 또는 수검자(랜덤)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: B.4.1. 5개 평가항목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4 고객만족(수검사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 : 배점 80점

B.4.1	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	
평가항목 B.4.1.2	평가기준 (배점 : 10)	평가결과
건강진단 기관 이 용자의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구축 여부	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구축이 적정한 경우	☐ 10
	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구축이 보통인 경우	☐ 6
	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구축이 미흡한 경우	☐ 2
평 가 취 지	수검자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접수, 처리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“10” -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접수, 처리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“6” -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가 없는 경우 “2” (구체적인 절차 비문서화) - 시스템은 있으나 처리내용을 안내(홈페이지, 게시판 등)하지 않은 경우 : 보통으로 평가	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4 고객만족(수검사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 : 배점 80점

B.4.1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	
평가항목 B.4.1.3	평가기준 (배점 : 20)
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국어 서비스제공 여부	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이 적정함
	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이 보통임
	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이 미흡함
평 가 취 지	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국어 서비스제공 여부를 평가
평 가 방 법	- 외국어 문진표, 개인표 5종이상 비치 및 특검 임상 절차에 대한 모국어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"20" - 외국어 문진표와 개인표 5종 미만 비치 "12" - 외국어 문진표와 개인표 미비치 "4" - 모국어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: 공공기관, NGO단체 등과 업무협약등 증빙서류가 확인 가능
차기 평가 (예정)	-외국인 모국어 서비스 제공 체제 마련 -> 이행 실적 및 비율 평가(비대상 동일그룹 평균점수)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4 고객만족(수검사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 : 배점 80점

B.4.1	직원 신분공개	
평가항목 B.4.1.4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건강진단 시 직원 신분 공개 (신분증 패용)	신분공개 상태가 적정한 경우	☐ 5
	신분공개 상태가 보통인 경우	☐ 3
	신분공개 상태가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특검기관 종사자들이 수검자가 쉽게 확인 가능한 형태의 신분증(명찰)을 착용하도록 하여 수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전 직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고 신분증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“5” - 직원의 일부만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고 신분증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“3” - 전 직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신분증 상태가 알아보기 힘든 경우 “1” - 신분증 상태 : 사진, 성명, 소속이 명확 기재되고 손상이 없어야 함. - 한단계 하향평가 : 신분증 상태 조건 미충족하거나 손상(1명이상)으로 알아볼 수 없는 경우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4 고객만족(수검자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 : 배점 80점

B.4.1	수검자 사생활 보호	
평가항목 B.4.1.5	평가기준 (배점 : 5)	평가결과
수검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여부	수검자 사생활 보호가 적정한 경우	☐ 5
	수검자 사생활 보호가 보통인 경우	☐ 3
	수검자 사생활 보호가 미흡한 경우	☐ 1
평 가 취 지	검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진 내용, 신체 노출 뿐 아니라, 특히 집단 검진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바,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평가	
평 가 방 법	- 검진 각 단계별 공간분리가 80%이상에서 이루어지며,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“5” - 검진 각 단계별 공간분리가 60~80%미만에서 이루어지며,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“3” - 검진 각 단계별 공간분리가 60%미만에서 이루어지며,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시행 “1”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4 고객만족(수검사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 : 배점 80점

B.4.2	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수(배점:50)	취득 점수	삭제
평가항목 B.4.2.1	평가기준 (배점)		평가결과
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당 특 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비율 평가	전문의 1명당 60% 이상	50	☐ 50
	전문의 1명당 30% 이상 ~ 60% 미만	30	☐ 30
	전문의 1명당 30% 미만	10	☐ 10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비율이 60% 이상인 사업장의 검진기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의 1명당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비율이 60% 이상인 사업장의 검진기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		
평 가 방 법	-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당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비율이 60% 이상 “50” -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당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비율이 30% 이상 ~ 60% 미만 “30” -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당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비율이 30% 미만 “10”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4 고객만족(수검사, 사업장) 및 서비스 향상활동 : 배점 80점

B.4.2		사후관리 대상 지도	취득 점수	17년 의사 평가 항목
평가항목 B.4.2.1		평가기준 (배점 : 20)		평가결과
유소견자에 대한 의학 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명의 적절성 여부 확인		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적정	☐	20
		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보통	☐	12
		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	☐	4
평 가 취 지		특수검진에서 전체 유소견자들(D1, D2)을 대상으로 기관으로 내원케 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하는 것은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바, 유소견자들에게 의학적 소견,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,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평가		
평 가 방 법		- 유소견자에게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, 업무적합성을 담당자가 직접 설명 80% 이상 "20" - 유소견자에게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, 업무적합성을 담당자가 직접 설명 하는 경우가 50%이상~80% 미만 "12" - 유소견자에게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, 업무적합성을 담당자가 직접 설명 50% 미만 "4" - 유소견자 10명 이상 선정하여 직접 설명 여부 평가 : 서류 대장 확인 - 직접설명 : 특검기관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사업장 방문 상담 또는 유선 직접 통화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5 그 밖의 제반사항 : 배점 60점

B.5.1	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의 적정성	취득 점수	
평가항목 B.5.1.1	평가기준 (배점 : 50)		평가결과
특수건강진단 개인표 송부일의 적정성	건강진단 개인표 송부가 적정한 경우	☐	50
	건강진단 개인표 송부가 보통인 경우	☐	30
	건강진단 개인표 송부가 미흡한 경우	☐	10
평 가 취 지	특수건강진단 결과 개인표 송부일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(건강 검진일 기준)		
평 가 방 법	-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90% 이상인 경우 “50” -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70% 이상 ~ 90% 미만인 경우 “30” -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70% 미만인 경우 “10”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5 그 밖의 제반사항 : 배점 60점

신설

가점

B.5.1	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반송 및 삭감 비율	취득 점수	
평가항목 B.5.1.1	평가기준 (가점 : 10)		평가결과
특검비용지원 반송 및 삭감 비율	비용지원 전송 파일 반송비율 20%미만 및 삭감비율 0.5%미만	☐	10
	비용지원 전송 파일 반송비율 20%미만 또는 삭감비율 0.5%미만	☐	5
평 가 취 지	소규모 사업장 건강확보 및 법적 제도이행 노력도 가점 대상 : 국고 비용지원 사업 수행 기관		
평 가 방 법	- 평가기간동안(17.5~18.12) 삭감 및 반송 비율 평가(파일 전송일 기준) - 반송 및 삭감비율(%) = [(17년비율) + (18년비율)]/2 ※ 반송비율(%) = [(반송 처리된 파일 건수)/(전체 전송파일 건수)] * 100 ※ 삭감비율(%) = [(삭감 처리된 파일 건수)/(전체 전송파일 건수)] * 100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5 그 밖의 제반사항 : 배점 60점

B.5.1	문진결과 기록 보관	취득 점수	
평가항목 B.5.1.2	평가기준 (배점 : 10)		평가결과
문진결과 의 전산 화 등 기록보관 확인	문진결과 의 전산자료 보관이 적절함	☐	10
	문진결과 의 전산자료 보관이 보통임	☐	6
	문진결과 의 전산자료 보관이 미흡함	☐	2
평 가 취 지	문진결과 의 전산화 등 기록보관(야간작업 포함) 정도를 평가 <사전준비사항> 문진표 관리현황		
평 가 방 법	- 문진결과 의 80% 이상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음 “10” - 문진결과 의 30% 이상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음 “6” -문진결과 의 30% 미만만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거나,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“2” -전체 수검자에 대한 전산 보관 비율(필요시 무작위 20건 추출하여 비율평가)		

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 항목

B.6 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: 최대 +50점

B.6.1	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	취득 점수	신설
평가항목 B.6.1	평가기준 (가점 : 최대+50)		평가결과
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	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중독질환 발굴 : ____건 x 30점 = ____점 (최대+50점) ②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중독질환 발굴 실적이 있는 경우 +50점 ③ 화학적인자 직업병 유소견자(D1) 발굴 : 사업장당 +10점		____점
평 가 취 지	중독질환 발굴 및 예방노력 평가		
평 가 방 법	- 평가 기간 동안 직업환경의학과 내원 근로자 또는 타 진료과의 의뢰 대상자에 대한 중독질환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보고한 실적을 평가 - D1에 대한 판정 즉시(결과표 송부일전) 고용부 또는 공단에 통보한 실적 평가 - 객관적인 증빙자료(문서 등)가 확인 되어야 함 - 화학적인자(162종) : 유기108종, 금속19종, 산알칼리 8종, 가스14종, 허가대상13종		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향후 일정

- 설명회 관련자료 홈페이지 업로드[매뉴얼, 평가표 등]
- 설명회 미참석 기관은 매뉴얼 별도 우편발송
- 기관평가 실시 : 19.2.25(월) ~8.30(금)
- 평가결과 통보 : 19.9월 중
-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 : 19.10월 중
- 평가 등급 확정 : 19.11월 중, 평가운영위원회(고용부)
- 결과 공표 : 19.12~익년1월, 고용부 및공단 홈페이지

특수건강검진기관 평가

평가전 준비사항

- **평가매뉴얼 자체평가 실시(방문평가 전)**

- 공단 홈페이지 양식[매뉴얼 및 평가표] 업로드

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 / 사업안내 /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/ 특수건강진단기관 / 자료실)

- **평가에 필요한 사전 증빙자료 준비(평가항목별)**

- 교육 이수증, 인력 4대보험 및 경력증명서, 특검관련 매뉴얼 및 지침
- 고용부 행정조치 공문(해당시), 특검평가 관련 내외부 문서 등

감사합니다.



안전 앞에 늘 겸손하세요!